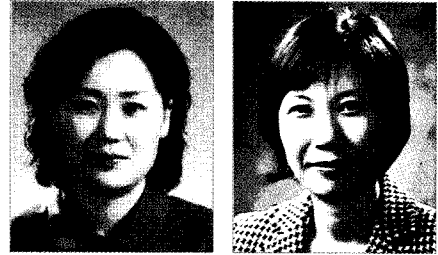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자격검정제도의 제안



이 민 아 유 복 희
(군산대 주거 및 실내계획 전공 교수) (울산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 원고는 2008년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의 일부로서, 자격검정제도의 검정과목, 검정기준 및 방법 등을 제안하기 위한 내용의 요약이다.

1. 자격검정과목의 제안

1) 자격검정과목 제안을 위한 조사·검토과정

한국주거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검정과목 제안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2급 주택사 검정과목 제안을 위해 학과 명칭에 '주거'가 명시되어 있으면서 주거학 관련 교과목이 학과전체 전공 교과목 중 1/2 이상인 전국의 12개 학과를 대상으로 가장 최선의 교과과정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12개 학과에 개설되는 33개 교과목 중 50% 이상의 학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21개 교과목을 검정과목의 기본교과목으로 선정하였고, 주거학과에서 다수가 선택하고 있지 않지만, (가칭)주택사의 검정과목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주택법규, 주택정책, 주택상담, 주거복지)을 추가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기본교과목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의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안 1, 2의 검정교과목이 작성되었고, 다음으로 주택상담사 직무분석(2005년 보고서 참조)에 따른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추가교과목을 포함하는 검정과목 제안3(직무분야 중심), 제안4(직무분야 중심의 1,2차 구분)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4개의 검정과목안의 장

단점을 분석, 이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였다(표 1).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제안한 최종안의 검정과목이 현행 주거학과의 교과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검증단계로서, 제안1~4와 최종안의 검정과목 구성을 검토하였으며(표 3), 최종안은 현행 주거학과의 교과과정을 잘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12개 주거학과에 5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조 회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29일 설문지를 우편과 이메일 로 동시에 발송하였고, 2008년 11월 14일 의견이 모두 회 신되었다. 학과의견 조회결과, 검정과목에 대해서 위원회 의 최종안(5안)을 가장 많이 선택되어 위원회 최종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2급 주택사 검 정과목(안)이 확정된 후 1급 주택사 검정과목 제안을 위한 위원회 논의 결과, 주택사의 가장 강점이 되는 직무 내용 을 검정과목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2) (가칭)2급 주택사 자격검정과목 제안

자격검정과목 최종안의 설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본 교과목중심의 검정영역분류는 자격취득자의 진로 및 업 무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으나 현재 주거학 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이해를 평가하는 데 는 바람직한 분류체계로 판단된다. 또한, 직무분야를 중심 으로 할 경우 진출분야 및 업무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장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표 1] (가칭)2급 주택사 검정과목 제안

검정과목(분야, 영역)		주요 내용	시험 교과목
1차	주거환경일반	주택 및 주거환경계획 이론으로서, 주거환경과 거주자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주거사, 주거문화, 주거환경심리, 주거환경학, 주택·주거단지계획 (총 5과목)
	주택설계/디자인	주택과 주거공간의 설계와 디자인을 위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가한다.	주택설계, 실내디자인(론), 특수주거설계/디자인, 생활디자인, 색채학, 인간공학 (총 6과목)
	주택관리/정책	주택의 유지관리 및 경영정책과 복지에 필요한 지식의 유무를 평가한다.	주택관리, 주택정책(추가교과목), 주거경제, 주거복지(추가교과목) (총 4과목)
	주택건축기술일반	주택관련법규를 기반으로 하여, 주택의 구조, 재료 및 설비 등 주택건축기술의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주택구조, 주택재료, 주택설비, 주택법규 (추가교과목) (총 4과목)
2차	주택기획실무	주거환경 및 주택을 기획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전반적 능력을 평가한다.	1차 검정과목을 통합한 기획관련 내용
	주택조사분석실무	주거환경 및 주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지식 및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	1차 검정과목의 통합내용에 주거환경평가조사/연구를 적용

점은 있으나 기본교과목의 누락, 검정영역의 과목 불균형, 2차 과목으로의 적절성 부족 등의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최종안에서는, 1차 검정과목은 기본적 지식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시험과목으로서 교과목 중심의 분류체계를 따라 시험교과목을 구성하고, 2차 검정영역은 구체적 시험교과목을 명시하지 않고, 강점이 되는(유사분야의 자격자와 차별화되는)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안에서는 기본교과목 이외에 추가교과목으로 주택법규, 주택정책, 주거복지를 포함하였다(표 1).

1차 검정과목은 주거학과의 기본교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적 지식습득 정도를 평가하는 과목명으로 구성하여, 주

거학 분야의 generalist로서의 직무분야(직무내용)를 표현하고, 2차 검정과목은 강점이 되는 직무내용을 과목명으로 명시하여, 유사자격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3) (가칭)1급 주택사 검정과목의 주요내용

(가칭)2급 주택사의 검정과목(안) 확정 후, (가칭)1급 주택사의 검정과목(안)을 논의하였다. 건축, 실내건축 등 유사분야의 1급 수준의 자격과 비교하여, (가칭)주택사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며, 자질의 강점을 검정할 수 있는 검정과목으로, (가칭)2급 주택사의 모든 검정과목의 내용을 포괄하고 심화시킨 과목을 제안하였다(표 2).

[표 2] (가칭)1급 주택사 검정과목 제안

검정과목	주요 내용
주택실무심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의 기획, 설계/디자인, 관리/리모델링, 주택의 평가, 주택조사연구 등, 주택의 기획으로부터 평가까지 주택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심화 능력을 평가한다.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표 3] 검정과목구성 검증표

분류 형태 교과목	제안1 (기본교과목중심)		제안2 (연구영역중심)		제안3 (업무영역중심)		제안4 (업무영역중심)		최종안도출(제안5) (기본교과목+추가교과목(주택법규, 주택 정책, 주택상담, 주거복지)+업무영역중심)			
	교과목	검정과목 (분야, 영역)	교과목	검정과목 (분야, 영역)	교과목	검정과목 (분야, 영역)	교과목	검정과목 (분야, 영역)	교과목	검정과목1차 (분야, 영역)	교과목	검정과목 2차 (분야, 영역)
주거학	주거환경심리	주거환경일반			●	●	●	●	●	●	●	●
	주거문화				●	●	●	●	●	●	●	●
	주거사	주거사			●	●	●	●	●	●	●	●
	주거단지계획	주거단지계획			●	●	●	●	●	●	●	●
	주택계획	주택계획 및 설계			●	●	●	●	●	●	●	●
	주거환경학	주거환경평가/조사			●	●	●	●	●	●	●	●
주거생활조사/연구					●	●	●	●	●	●	●	●
	주거구조	주거환경 평가/조사			●	●	●	●	●	●	●	●
	주택제도				●	●	●	●	●	●	●	●
주거심비	주거심비	주거환경심리/심비			●	●	●	●	●	●	●	●
	주택법규				●	●	●	●	●	●	●	●
제도 및 도화	특수주거설계/디자인	주거환경심리/심비			●	●	●	●	●	●	●	●
	주택설계	주거환경심리/심비			●	●	●	●	●	●	●	●
컴퓨터디자인	실내디자인(이론및실습)	주택설계/실내			●	●	●	●	●	●	●	●
	생활디자인(가구, 조명 등)	실내디자인			●	●	●	●	●	●	●	●
	인간공학				●	●	●	●	●	●	●	●
	색채학				●	●	●	●	●	●	●	●
주택관리	주택관리/경영	주택관리/경영			●	●	●	●	●	●	●	●
	주택정책	주택관리/경영			●	●	●	●	●	●	●	●
주거경제	주거경제	주거정책/제도			●	●	●	●	●	●	●	●
	주택상담				●	●	●	●	●	●	●	●
주거복지	주거복지	주거복지(상담)			●	●	●	●	●	●	●	●
	주거복지	주거복지(상담)			●	●	●	●	●	●	●	●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표 4] 검정방법 및 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가칭)주택사	2급	1차 : 필기 (지식 및 이론 평가)	객관식	과목당 40점 이상(100점 만점),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2차 : 필기 (실무 평가)	객/주관식 혼용	과목당 40점 이상(100점 만점),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1급	필기(실무 전문성 평가)	논술형	60점 이상(100점 만점)

2. 자격검정기준 및 방법

1) 검정방법

앞에서 제안한 (가칭)주택사 검정과목에 따라 <표 4>와 같은 검정방법과 검정시행 형태를 제안하였고, 합격기준은 2급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1급은 “기술사”의 합격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검정은 연 1회 실시하고 2급의 경우 1, 2차 같은 날 실시하며, 1차 시험 불합격은 2차 시험 합격 무효, 1차 시험 합격자는 2년 이내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2) 응시자격

(가칭)주택사의 응시자격은 <표 5>와 같이 제안하였고,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별표 1의 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기준으로 2급의 경우 “기사” 등급에, 1급의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 중 주거학 관련 분야인 ‘실내건축기사’와 ‘건축기사’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관련학과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 관련직무분야

[표 5]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2급	1차시험 본 자격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관련학과의 대학원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3.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 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5.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6.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차시험 1차시험 합격후 2년 이내인 자(1차시험 합격발표일로부터 2년간이며, 2차시험 원서접수 초일이 면제기간 2년 내에 산입되는 경우 2차시험 접수기간중 접수가능) 1차시험과 동시에 응시 가능.
1급	본 자격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대학졸업자등으로서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대학(혹은 대학원) 졸업자등은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3.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 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4.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5. 관련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주택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 전환방안

구분	주요내용										
졸업자 등	"졸업자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본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참고	<p>"관련학과"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학과)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키워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공(학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거</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거, 주거환경 등의 주거전공(학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내디자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내디자인, 실내건축 등의 실내디자인 관련 전공(학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축</td> <td style="text-align: center;">건축, 건축공학 등의 건축관련 전공(학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전공(학과) 중 응시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이수과목을 검토하여 응시자격 인정 가능</td> </tr> </table>	키워드	전공(학과)	주거	주거, 주거환경 등의 주거전공(학과)	실내디자인	실내디자인, 실내건축 등의 실내디자인 관련 전공(학과)	건축	건축, 건축공학 등의 건축관련 전공(학과)	기타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전공(학과) 중 응시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이수과목을 검토하여 응시자격 인정 가능
키워드	전공(학과)										
주거	주거, 주거환경 등의 주거전공(학과)										
실내디자인	실내디자인, 실내건축 등의 실내디자인 관련 전공(학과)										
건축	건축, 건축공학 등의 건축관련 전공(학과)										
기타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전공(학과) 중 응시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이수과목을 검토하여 응시자격 인정 가능										
관련 직무 분야	<p>"관련직무분야"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업무 또는 관련업계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관련업무</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택상담 / 주택기획 / 주택설계 및 디자인 / 주택관리 / 리모델링 / 주거환경평가 / 주택조사·연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업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택건설업계 / 주택분양대행업계 / 실내디자인업계 / 주택설비업계 / 주택관리업계 / 리모델링업계 / 생활디자인업계(가구, 조명, 생활소품 등) / 주거환경평가업계 / 주택관련연구소 /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정부출연기관 등의 주거환경 관련부서에 위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계 또는 관련업무 중 응시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 인정 가능</td> </tr> </table>	관련업무	주택상담 / 주택기획 / 주택설계 및 디자인 / 주택관리 / 리모델링 / 주거환경평가 / 주택조사·연구	관련업계	주택건설업계 / 주택분양대행업계 / 실내디자인업계 / 주택설비업계 / 주택관리업계 / 리모델링업계 / 생활디자인업계(가구, 조명, 생활소품 등) / 주거환경평가업계 / 주택관련연구소 /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정부출연기관 등의 주거환경 관련부서에 위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계 또는 관련업무 중 응시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 인정 가능				
관련업무	주택상담 / 주택기획 / 주택설계 및 디자인 / 주택관리 / 리모델링 / 주거환경평가 / 주택조사·연구										
관련업계	주택건설업계 / 주택분양대행업계 / 실내디자인업계 / 주택설비업계 / 주택관리업계 / 리모델링업계 / 생활디자인업계(가구, 조명, 생활소품 등) / 주거환경평가업계 / 주택관련연구소 /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정부출연기관 등의 주거환경 관련부서에 위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계 또는 관련업무 중 응시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 인정 가능										

는 주택상담사 자격증 발전방안 연구보고서(2005)의 직무 분야에 기초한다.

3. 요약

한국주거학회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증을 위한 과목 선정을 위해 다수의 검정과목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12개 주거학과의 의견조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현행 주거학과의 교과과정을 잘 포괄하고 있고 직무영역의 능력을 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칭)2급 주택사 검정과목(안)과 직무영역의 평가가 강화된 (가칭)1급 주택사 검정과목을 제안하였다.

(가칭)주택사는 설정된 검정과목에 따라 2급 주택사의 검정방법은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는 기본 지식 및 이론을 평가하는 객관식 시험형태를, 2차는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객/주관식 혼용의 시험형태를 제안하였다. 1급 주택사는 1차에 한하며 실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형을 시험형태로 하였다. 또한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2급의 경우 "기사"등급에, 1급의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